
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34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9.

발 의 자 : 임종득 · 서천호 · 김예지
성일종 · 김승수 · 김상훈
윤상현 · 나경원 · 이종배
정동만 · 강선영 · 김성원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어촌의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·생활기반과 편익시설·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·확충하고,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우편·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 주민이 생필품, 의약품, 농자재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적시에 공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, 민간 물류체계만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역할 확대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주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및

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농
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0호카목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0호카목을 타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카.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(공동화 및 정보화를 포함한다) 확충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9. (생 략)</p> <p>10. “생활환경정비사업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, 생활기반 및 편익 시설·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</p> <p>가. ~ 차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 <u>카. (생 략)</u></p> <p>11. ~ 18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차. (현행과 같음)</p> <p> <u>카.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(공동화 및 정보화를 포함한다) 확충 사업</u></p> <p> <u>타. (현행 카목과 같음)</u></p> <p>11. ~ 18. (현행과 같음)</p>